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A Study on an Efficient Plan for Agricultural Machinery Rent Project

김병갑* 신승엽* 이용복* 윤진하*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B. G. Kim S. Y. Shin Y. B. Lee J. H. Yun

1. 서론

최근 농산물 시장 개방과 IMF 여파 등으로 농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농기계 구입시 지원되던 구입자금에 대한 보조가 없어지고 용자율 또한 낮아져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기계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기임대, 단기임대, 농작업대행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대사업의 유형, 임대기종의 이용 및 유지관리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임대사업의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2. 조사방법

임대사업 실태조사는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1). 임대사업 실시기관은 2002년 현재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17개 지방자치단체 모두와 108개 단위농협 중에서 임대작업면적이 많은 단위농협 9개소를 유형별로 유의선정하여 조사표에 의한 현지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임대사업 실시기관 및 농가

구분		장기임대	단기임대	농작업대행
임대사업 실시기관 (26)	지방자치 단체(17)	시(군)청(6) 평택, 김포, 양평, 화성, 여주, 안성	-	-
	농업기술 센터(11)	파주	남양주, 영동, 청주, 홍성, 연기, 공주, 아산, 고양	강화, 음성
	단위농협(9)	진천, 해보, 용안	-	금산, 공덕, 대촌, 황룡, 남평, 일죽
농가(53)		16	18	19

주) ()안은 조사표분수

3. 결과 및 고찰

가. 임대 농기계 보유 및 이용현황

임대사업 주관기관의 농업기계 보유현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당 평균 73.6대를 보유하고 있어 농협의 11.7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장기임대를 실시하는 기관이 74.3대, 단기임대는 52.3대, 농작업대행은 20.4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표 2 임대사업 기관별, 유형별 농기계보유 현황

(단위 : 대/개소)

구 분	장기임대	단기임대	농작업대행	전체
지방자치단체	103.6 (45.7)	52.3 (6.9)	55.0 (10.0)	73.6 (23.1)
농 협	5.6 (3.3)	-	14.7 (6.0)	11.7 (5.0)
전 체	74.3 (33.1)	52.3 (6.9)	20.4 (6.6)	52.21(6.9)

주) ()안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보유대수의 합

임대사업 농기계의 이용현황은 농작업대행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작업면적이 각각 43.4ha, 22.1ha, 25.5ha로, 대당 이용농가수는 각각 58.3, 21.3, 57.4호로 장기임대나 단기임대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한편, 단기임대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이용농가수는 적지만 탈망기, 논두렁조성기, 파이프 정·성형기, 상토조제기 등의 대당 이용농가수가 각각 12.7, 5.3, 14.1, 15.0호/대로 많게 나타났다.

표 3 임대사업 유형별, 기종별 대당 이용현황

구 분		지방자치단체			농 협			전 체		
		장기 임대	단기 임대	농작업 대행	장기 임대	단기 임대	농작업 대행	장기 임대	단기 임대	농작업 대행
작업면적 (ha/대)	트랙터	35.7	3.7	35.3	28.0	-	47.5	35.5	3.7	43.4
	이앙기	10.2	2.9	-	7.3	-	22.1	10.2	2.9	22.1
	콤바인	21.1	5.0	-	44.2	-	25.5	23.7	5.0	25.5
이용농가수 (호/대)	트랙터	12.4	4.2	37.0	1.0	-	68.9	12.2	4.2	58.3
	이앙기	7.3	2.7	-	1.0	-	21.3	7.2	2.7	21.3
	콤바인	15.6	4.0	-	23.7	-	57.4	16.5	4.0	57.4

나. 임대기간 및 이용자

장기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러나,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기관에서 재계약할 때 이전 임차인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곳이 많고, 임차 농업인도 대부분 재계약을 원하고 있어 계약이 끝나도 계속하여 임차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가 원한다면 최초로 임차받은 농가가 내구년수에 이르기까지 임대기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임대에서의 임대기간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3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실시간에 따라서는 농번기에는 2일로 제한한다거나 농한기나 천재지변, 농기계의 고장시에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임대의 이용자는 공동이용을 조건으로 5호 또는 10호 이상의 농가로 구성된 공동이용 농가나 작목반에 임대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6), 이 경우에는 대부분 한 농가가 임대농기계를 운전하고 유지관리하면서 공동명의로 임대한 농가에는 적은 비용으로 임작업을 해주고 있었다. 단기임대나 농작업대행의 경우 임대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이며, 임대기관에 따라서는 위탁영농회사나 임대수수료를 미납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를 제한하고 있었다.

표 4 장기임대 임대기간

(단위 : 개소)

1년	3년	내구년수까지	계
6 (54.5)	1 (9.1)	4 (36.4)	11 (100)

표 5 단기임대시 임대기간

(단위 : 개소)

1일	3일	신청면적을 계산하여 결정	계
1 (11.1)	7 (77.8)	1 (11.1)	9 (100)

표 6 장기임대 이용자수

(단위 : 호, 개소)

개별농가	작목반, 공동이용농가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	농협	계
14 (8.9)	124 (78.5)	7 (4.5)	13 (8.3)	158 (100)

다. 임대농기계 운용 및 유지관리

장기임대의 경우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는 임차 농업인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단기임대에서는 소모품 교환이나 고장 수리 등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주관기관에서 담당하고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수리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한 곳이 60%이며, 전적으로 주관기관에서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40%로 나타났다. 농작업대행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모든 농기계의 유지관리 업무를 주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임대사업 유형별 농업기계의 예상내용년수는 단기임대가 트랙터 6.6년, 이앙기 4.3년, 콤바인 4.1년으로 가장 짧고 그 다음은 농작업대행, 장기임대 순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7), 이는 단기임대 이용자는 임대농기계를 자신의 농기계처럼 아껴서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또 농기계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가서 사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7 임대농기계의 예상 내용년수

(단위 : 년)

구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장기임대	9.1	5.4	5.0
단기임대	6.6	4.3	4.1
농작업대행	8.0	7.0	5.4

라. 보험 및 면세유

임대사업용 농기계는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르고, 그 용도도 공공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농협의 농기계 종합공제 및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기계특약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 한편, 손해보험회사의 농기계보험은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회사에서 농업기계의 보험가입을 잘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임대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장기임대 농기계의 출하증명서를 인수받아 농협에 신고하여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의 소유자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으며, 농작업대행의 경우에도 농협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마. 임대수수료 및 수입·지출

장기임대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농기계가 오래될수록 임대수수료가 적어 지도록 년차별로 임대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었으며(표 8) 내구년수 동안의 임대수수료의 총액은 농기계 구입가격의 63%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임대의 임대수수료는 하루 단위로 책정한 기관이 대부분이고 2개 기관에서는 면적단위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기종별 평균 임대수수료는 하루에 트랙터 105천원, 승용이앙기 90천원, 콤바인이 108천원 수준이었으며(표 9), 농작업대행의 경우 평당 수수료는 경운 63, 정지 73, 이앙 73, 수확 114원으로 민간수수료의 64.9~74.5% 범위에 있었다(표 10).

표 8 농기계가격 대비 연차별 장기임대 수수료 비율 (단위 : %)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합계
트랙터	11.3	10.5	9.6	8.7	7.7	6.5	5.2	3.8	63.4
이앙기, 콤바인	16.8	15.2	13.2	10.3	7.0	-	-	-	62.5

표 9 단기임대 수수료

구 분		트랙터	보행이앙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트)로터리	트)쟁기
임 대 수수료	일당(천원/일)	105	40	90	108	34	21
	면적당(원/평)	35	20	40	60	20	10

표 10 농작업대행 수수료 (단위 : 원/평)

구 분	경운	정지	이앙	수확
기관평균(A)	63	73	73	114
민간평균(B)	85	113	103	156
A/B(%)	74.5	64.9	70.7	72.9

임대사업의 농기계 1대당 연간수수료 수입은 농작업대행의 경우가 가장 많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해당 수입이 각각 4,088천원, 3,970천원, 9,59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장기임대, 단기임대 순이었다(표 11). 이는 농작업대행의 경우 이용면적 및 농가수가 가장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종별로는 장기임대나 농작업대행의 경우 콤바인의 수수료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콤바인 또는 수확작업의 수수료가 타기종(작업)보다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단기임대의 경우에는 트랙터의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앙기, 콤바인보다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 임대일수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11 임대사업 유형별, 기종별 임대수수료 수입 (단위 : 천원/대)

구 분	장기임대	단기임대	농작업대행
트랙터	2,537	1,397	4,088
이앙기	1,223	717	3,970
콤바인	3,414	717	9,596

임대사업의 지출액을 보면 단기임대보다 농작업대행에서 지출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콤바인의 감가상각비 및 이자는 농작업대행의 경우가 단기임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작업대행에서 사용되는 콤바인의 규격이 단기임대에서 사용되는 콤바인의 규격보다 더 커서 구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표 12).

표 12 임대사업 유형별, 기종별 대당 연간지출비용

(단위 : 천원/대)

구 분	단기임대			농작업대행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감가상각비	2,974 (11.9) ¹⁾	2,171 (19.0)	3,229 (19.0)	2,690 (11.9)	1,900 (19.0)	8,044 (19.0)
이 자	658 (2.6)	300 (2.6)	446 (2.6)	594 (2.6)	263 (2.6)	1,111 (2.6)
수리비	87 (0.3)	142 (1.2)	631 (3.7)	430 (1.9)	122 (1.2)	1,445 (3.4)
인건비 ²⁾	-	-	-	3,483 (15.4)	1,334 (13.3)	2,439 (5.8)
유류비	-	-	-	399 (1.8)	70 (0.7)	596 (1.4)
기 타	-	-	-	1,930 (8.5)	1,183 (11.8)	2,435 (5.8)
계	3,719 (14.8)	2,613 (22.8)	4,306 (25.3)	9,526 (42.1)	4,872 (48.6)	16,070 (38.0)

주) 1) : 구입가격에 대한 비율 2) : 정규직원 인건비는 제외됨

바. 파급효과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지역내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임대사업 실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들은 임대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임대사업은 지역이나 임대유형에 따라 민간에서 실시하는 위탁작업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농작업대행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민간의 임작업료 상승을 억제하거나 농작업 수수료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3 임대사업 실시에 대한 의견

(단위 : 호)

구 분		장기임대	단기임대	농작업대행	계
임대 이용농가	찬성	13	12	10	35
	반대	-	-	2	2
임대 미이용농가	찬성	2	6	4	12
	반대	1	-	1	2
계	찬성	15	18	14	47
	반대	1	-	3	4

표 14 임대사업 실시가 지역내 임작업료에 미친 영향

구 분		장기임대	단기임대	농작업대행	
주관 기관 (개소)	영향 받음	임작업료 상승 억제	2	2	4
		임작업료 하락	-	-	1
	영향 없음		5	7	1
	계		7	9	6
농가 (호)	영향 받음	임작업료 상승 억제	3	2	5
		임작업료 하락	-	-	5
	영향 없음		10	9	1
	계		13	11	11

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임대사업의 운영주체는 장기임대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협은 물론 시·군청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나, 단기임대 및 농작업대행은 농기계의 수리정비가 가능한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대대상 농기계는 장기임대에서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고성능의 이용도가 높은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임대에서는 탈망기, 논두렁조성기, 파이프정·성형기, 상토조제기, 퇴비살포기 등 운전하기 쉽고, 구조가 간단하여 고장발생이 적으며, 이용기간이 짧은 소형기종 또는 작업기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농작업대행은 이용도가 높은 기종이나, 고성능방제기, 보통형콤바인 등 작업기간이 짧고 가격이 비싼 고성능의 농기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임대사업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보조지원이 필요하며, 임대대상 농기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 공제제도를 변경하고, 농기계보험에 대해서는 가입료를 보조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 농기계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26개 기관과 해당지역내의 53농가에 대하여 임대사업의 유형, 임대농기계의 이용 및 유지관리, 운영 수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장기임대의 경우 개소당 74.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트랙터는 35.5ha, 이앙기 10.2ha, 콤바인 23.7ha를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기간은 1년이 가장 많았으며, 임대수수료는 내구년수 동안 기계구입가격의 약 63%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단기임대의 경우 개소당 52.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탈망기, 논두렁조성기, 상토조제기 등 소형 농기계 또는 작업기의 보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기간은 3일이 77.8%로 가장 많았으며, 1일 임대료는 트랙터, 보행이앙기, 승용이앙기, 콤바인이 각각 105천원, 40천원, 90천원, 108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기임대 농기계는 노후화가 빠르고, 고장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농작업대행의 경우에는 개소당 20.4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작업면적은 트랙터 43.4ha, 이앙기 22.1ha, 콤바인 25.5ha로 나타났다. 평당 임작업료는 경운, 정지, 이앙, 수확작업이 각각 63원, 73원, 73원, 114원이었으며, 수리, 운전, 운반 등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기임대는 고성능의 이용도가 높은 기종을 선택하여 작업면적 확보가 가능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임대는 운전하기 쉽고 고장발생이 적고 이용기간이 짧은 소형기종 또는 작업기를 중심으로 수리정비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작업대행은 이용도가 높고, 작업기간이 짧고 가격이 비싼 기종을 중심으로 원활한 수리, 정비, 운전이 가능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농림부. 2001. 21세기 농업기계화사업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2. 社団法人 日本農業機械化協會. 1998. 農業機械リース・レンタル ガイドブック